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3, 2009년 04월

유럽 주요국 조세동향

유럽연합

- 유럽 각국 재무장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합의
 - 2009년 3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재무장관회의¹⁾(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 회의 개최
 - 2008년 12월에 확정된 유럽경제부흥계획(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에 따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 합의
 - 본 합의는 모든 부문에 부가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적 서비스 부문 (음식점 등)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다른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1) 27개 EU 회원국의 재무장관회의, 현재 의장국으로 체코에서 맡고 있음

□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의 문제점

- 지난 3월에 개최된 유럽재무장관회의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합의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일부 회원국은 회의에서 합의된 “제한된 부문에 대한 세율 인하”라는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
- 여기서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적어도 부가세율 15% 이상 적용 원칙
 - 회원국은 최대 5%를 초과하지 않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일부 특정품목 및 서비스에 한함)
 - 특정 조건 하에서는 노동집약서비스 업종에도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경감세율 적용으로 인해 국가별로 부가가치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며, 2009년 1월 현재 기본세율 25% ~ 15% 까지 다양하게 분포 (표 1. 참조)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부가세율 한시적 인하 정책 시행

- 영국의 경우 부가세율 17.5% → 15%로 인하
 - 부가세율 인하 정책은 내수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종료 예정

유럽연합 회원국 부가가치세율 표1)

국가	세율(%)
Austria	20
Belgium	21
Bulgaria	20
Cyprus	15
Czech Rep.	19
Denmark	25
Estonia	18
Finland	22
France	19.6
Germany	19
Greece	19
Hungary	20
Ireland	21.5
Italy	20
Latvia	21
Lithuania	19
Luxembourg	15
Malta	18
Netherlands	19
Poland	22
Portugal	20
Romania	19
Slovakia	19
Slovenia	20
Spain	16
Sweden	25
United Kingdom	15

* 2009년 1월 현재

생필품 등에 대한 특별 경감세율 적용

○ 프랑스 : 의약품, 신문 및 잡지 등 → 2.1%

○ 독일 : 농수산 식품류 → 5%

* 영국의 경우 0% 적용

□ EU 부가가치세 정책 및 향후 움직임

- 현재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지난 10여년 간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것
 - 통일된 부가가치세 적용은 유럽시장통합(EU Single Market)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으나 각 회원국의 실업률 감소 및 경기회복을 위하여 노동집약 서비스업종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 적용을 인정하여 음 (2000년도 이후)
- 환경관련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경감세율 확대 시행
 - 환경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련 산업 및 서비스에 특별 경감세율 적용 예정 발표 ('09. 4월)
- EU 조세정책의 변화
 - EU 조세정책은 27개 회원국 전체 동의를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은 많은 논의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중국

- 중국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세부시행규칙 제정 예정
 - 기업 관련 자산의 이전, 양도 시 이에 대한 가치산정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할 예정
 - 현재 관련 세부시행규칙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로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중국 조세제도 개혁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과세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 과거 관련 규정 (Foreign Enterprise Income Tax)²⁾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세정책은 Circular 71, 207 등 다수 존재했으며 이는 외국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적용되었음
 - Circular 71 : 기업의 합병, 스핀오프, 지분 조정 및 자산의 이전에 관한 사항
 - Circular 207 :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지분을 외국투자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정

2) 중국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업소득세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8년도 조세개혁을 통하여 외국인 특혜규정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함

□ 세부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구조조정 종류에 관한 규정

- 지분 또는 자산의 취득
- 인수합병
- 스핀오프 (Spin-off)
- 부채비율 조정
- 법인 형태의 변경
- 기업 청산 등

○ 일반원칙 (기업소득세법 : Corporate Income Tax)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이득 또는 손실은 합리적인 공정가치 (Reasonable Fair Value)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거래가격 (Transaction Prices)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 청산의 경우 또한 실제 거래가격 등에 의해 산정

○ 특별원칙의 적용

- 정부가 정한 특정원칙을 만족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는 특별원칙을 적용
 - 상업적 목적에 의한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
 - 기존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 등

□ 향후 일정

조만간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2008년 1월로 소급 적용 원칙

OECDdirect ('09.04.01호)

-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 북유럽 국가들과 조세 정보교환 협정 체결
 - 케이먼 제도는 북유럽 7개국³⁾과의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각국의 세원 확보 등과 같은 국제공조 체제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이로써 미국 정부와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이후 두 번째 성과

OECDdirect ('09.04.16호)



OECD Global Forum on Tax Treaties and Transfer Pricing
Transfer Pricing and Treaties in a Changing World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21-22 September 2009

- 대규모 OECD 국제회의 개최 예정
 - 이전가격세제 및 조세협약 관련 국제회의가 2009년 9월 21~22일 양일간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3)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파로 제도 (Faroe Islands)

○ 주요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음.

- OECD 조세모델 7, 9, 25조 관련 사항
- 정보력, 이전가격세제: 정보교환 관련 사항
- 이자비용
-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이전가격세제 변화
- 이전가격세제와 관세
- 조세협약과 이전가격세제와의 관계 정립 등

OECDdirect ('09.04.17호)

- 버뮤다 제도(Bermuda), 북유럽 7개국 및 뉴질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 버뮤다는 조세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적 공조에 처음으로 참여한 조세피난처 중 하나이며 이후 적극적인 참여국 가운데 하나임